

2025년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지원사업 모집공고

수출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·운송 등 수출물류에서 CA기술 등 저온유통 환경구축으로 신선도 향상을 통한 농산물 폐기물량 감축 및 품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5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 지원사업」 사업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7일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

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4개 업체 내외
- 사업기간 : 약정일로부터 당해연도 12.31까지
- 지원대상 :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(단체)
 -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 운영사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중소·중견기업
 - * (지원제외) '24년도 동 지원사업 참여포기 업체, 임수산물 업체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
- 지원자격 : '24년 ~ 공고일 기준 수출실적이 있으며, 부지를 확보한 업체
 - * 수출실적 : 무역통계진흥원(TRASS) 신고일 기준(제조사 또는 수출대행사 실적 중 높은 실적 기준)
- 지원내용 : CA저장고, CA질소발생기, 저온저장고(신축) 구축 지원

항목	기준단가	지원한도	총사업비	지원액(백만원)	
				국비(70%)	자부담(30%)
CA저장고 (신축, 개보수)	3백만원/m ²	132m ²	396	277.2	118.8
질소발생기 (고정식, 이동식)	110백만원/1식	1식	110	77	33
저온저장고(신 축)	1.3백만원/m ²	330m ²	429	300.3	128.7

- 지원조건 : 국비 70%(자부담 30%)
- 문의처 : aT신선수출지원부(061-931-0836)

2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 ~ '25. 11. 19(수) 18시限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: 수출종합지원시스템(www.global.at.or.kr) 서류 업로드

<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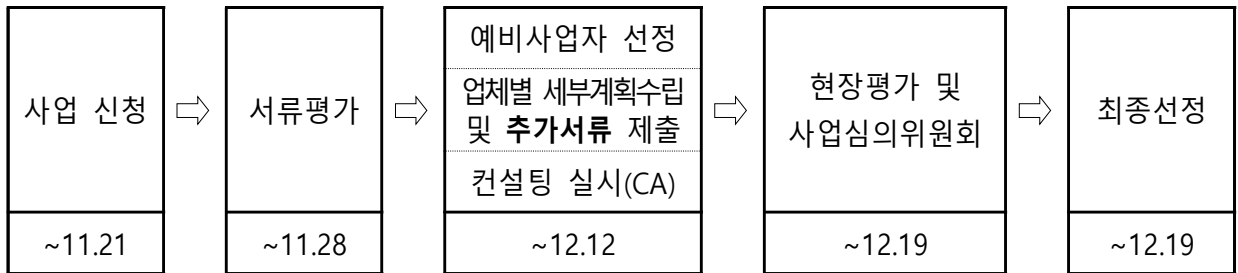
① 사업신청서(서식1) 및 사업계획서(서식2)	⑦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개년)
② 사업자등록증	⑧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(기 제출 시 제외)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3)	⑨ 시공업체 견적서 각 1부(비교 견적 포함)
④ 구축 예정부지의 대장(토지 및 건축물)	⑩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(서식4)
⑤ 구축 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(토지 및 건물)	⑪ 설계도면(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)
⑥ 구축 예정부지의 건축물 현황도	⑫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
	* 신속 시 건축물대장(현황도) 및 등기부등본은 제외

3

선정방법

□ 선정방법 :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,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업체별 사업예산 배정 확정

< 사업자 선정 절차(안) >



○ (가점항목) 농산물, 식품 안전과 시설 관련 인증 보유 및 창고 관리 전담인력 보유 시 서류평가 단계에서 최대 5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

* (관련인증) HACCP, GAP, FSSC22000, ISO45001, (전담인력)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사 보유자

< 예비사업자 대상 추가제출 서류 >

① 설계도, 시방서, 지적도(위치도) 등 각 1부	④ 상주감리원 선임계(해당 시)
②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(서식5~11)	⑤ 인력투입계획(해당 시)
③ 설비구축계획서(서식12)	⑥ 공인 원가검증기관 검토보고서

* (참고) 사업 선정업체 제출서류 : 1) 인허가 관련 서류, 2) 시공업체 계약서, 착수계 등 추후 재안내

4

정산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정산방법 : 기한 내 지원항목 구축증빙 및 수출이행 증빙 제출 후 검토결과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 지원

* 원본대조필 날인 후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상 기한 내 업로드

- (사업의무) 지원시설·설비 구축 완료 및 수출이행(CA컨테이너 2대이상)
- (정산요건) 지원시설·설비 구축 완료 시 정산인정금액의 70%까지 정산 가능하며, 수출이행 완료 시 잔여 30% 정산 가능

< 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70% 정산 신청 시 :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(보험기간 : 정산신청일 ~ 사업기간 종료일)
- 수출이행 증빙 : 수출신고필증 또는 BL상 CA컨테이너로 수출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구 삽입 필수(예시 : CA CONTAINER FLUSHING BY △△ 등)이며, 수출일정은 별도 진행 가능
- 수출이행 정산인정 기준 : 선적서류(BL)상 선적일자 또는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 상 수리일자 기준(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, 상업송장(I/V), B/L, P/L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)

*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국고보조금 정산 불가

□ 정산기준 및 제출서류 : 공통 및 세부정산기준 참고

5

정산보고 및 중요재산 등록

□ 정산보고 : 사업비(보조금)를 1억원 이상 수령하는 업체는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원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검증 확인을 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(별도 서식) 및 검증보고서를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aT로 제출

□ 사후관리 : 지원시설·설비 구축일로부터 10년간(이동식 질소발생기 5년) 사후관리 필요, aT관할 지역본부에서 반기별 1회(연 2회) 사후관리 실시

- 농식품부 또는 aT 사전 승인 없이 사후관리 기간 내 용도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폐기 등을 금지하며,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

- (중요재산 정보 표기) 사업비를 최종 교부받은 지원업체는 동판, 아크릴 등 떨어지지 않는 형태 중요재산 안내 표지판 제작·부착 필요

〈 농림축산식품 사업 안내문 〉

본 시설은 20△△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20△△.△월 △일까지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,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1. 사 업 명 :
2. 사 업 자 : (대표 △△△)
3. 시 설 규 모 :
4. 재 원 :
5. 총 사 업 비 : (부가세 제외)
6. 사후관리기간 : ~

20△△.△월 △일

- (부기등기) CA저장고(신축·개보수) 및 저온저장고(신축) 지원받은 경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

* 부기등기 이행을 위해 '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' 발급 요청 가능

- (보증보험 가입) 부기등기가 불가능한 시설 및 설비 구축의 경우, '정부보조금 지급 보증보험'에 가입 필요(사후관리 종료일까지, 자부담)